Department of Education
Carmen Fariña, Chancellor

공지 사항
2015년 4월 3일

교육감 규정 A-411
행동위기 완화/중재 및 911 연락

I.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의 주제 및 목적 설명

교육감 규정 A-411은 새로운 규정입니다. 본 규정은 행동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중재 및 완화, 911 연락에 관한 뉴욕시 교육청(이하 "교육청")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.[1]

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.

-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만한 행동에 가담할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행동을 규제할만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의 상황을 교직원이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.

- 학교장/대리인에게 반드시 문제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해야만 합니다. 안전이 허락되고 교직원의 행동완화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학부모에게는 전화로, 또는 직접 자신의 자녀와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.

- 상황에 대처하는 교직원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 행동을 안전하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: 1) 행동위기에 대처하는 전략 및 중재 2) 학교의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 활용. 위기에 대응하는 교사나 교직원이 문제 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, 교사/교직원은 위기 완화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다른 교직원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. 교사/교직원은 교감, 주임, 학교의 위기 중재팀의 일원, 가이던스

[1] 신체 부상 또는 의료상황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여 911에 연락하는 규정 및 절차는 교육감 규정 A-412에 나와 있습니다.

카운셀러, 가능한 경우 교내 정신건강 클리닉(SBMH)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내 보건센터(SBHC), 또는 이동 아동위기 대응팀(보로에서 제공하는 경우) 등 기타 적절한 직원이나 서비스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.

- 그러나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만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위협이 되고 그 상황이 교직원이나 위에 설명한 기타 지원 서비스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경우, 학교장/대리인은 반드시 911에 신고해야만 합니다. 학교장/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, 현장의 교직원/학교안전 요원이 911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즉시 학교장/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- 학생때문에 911에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, 학교장/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911에 전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-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면 현장에 출동한 911 응급대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, 반드시 학부모에게 현장의 911 대원들 및 자녀(학생)와 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

- 만약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연락이 된 상태라면, 현장의 911 대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부모에게 반드시 현장의 911 대원들 및 자녀(학생)와 전화로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.

- 만약 학부모가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, 현장의 911 대원들은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학부모의 요청이 뉴욕시 소방국(FDNY)의 의료지원 거절(Refusal of Medical Assistance)에 관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락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.

- 만약 학생에게 응급 처치 및/또는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교직원과 학부모는 적절한 다음 절차(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낼 것인지 등)를 의논해야 합니다.

-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교직원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학생이 응급 의료처치 및/또는 이송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.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, 교직원이 반드시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.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/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.

- 어떤 경우에라도 학생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나 처벌조치로서 911에 신고전화를 하거나 출동을 요청해서는 안됩니다.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, 911을 이러한 완화전략 대안 조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
-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닐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정신건강 클리어런스 레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- (학생의) 행동 위기가 발생하면 교직원은 학부모(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학생)와 만나 학생을 위한 적절한 긍정 행동 지원 및 중재를 논의해야 합니다.

- 각 학교의 위기 대응/예방교육/중재팀(위기중재팀)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 및 청소년 종합 발달 계획의 일환으로서 위기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
- 위기 완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 1) 행동 위기 상황 완화 전략, 2)위기에 처한 학생이 남들과 안전하게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교내의 장소 지정, 3) 완화 전략을 훈련받은 교직원 지정, 4) 학교 및 학부모에게 제공 가능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 파악(예, 정신건강 클리닉, 이동 위기팀, 응급/당일 정신건강 평가 제공 가능한 시설 등), 5) 위기 완화 및 대응 프로토콜이 교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설명.

- 학교장/대리인은 911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응급 접수 센터("EIC")에 전화 (718) 935-3210번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

- 학교장/대리인은 모든 학교 관련 사건(911 신고가 이뤄진 사건 포함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사건발생 리포트 (OORS Report)를 작성해야 합니다.

-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(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)에서는 OORS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적 질문에 응대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헬프데스크 운영시간은 월-금요일, 8:00 AM-5:00 PM 입니다. 헬프 데스크에 연락하려면 (718) 935-5004번으로 전화하여 OSYD Web Support로 연결을 부탁하면 됩니다.

-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-820 및 가정교육권 및 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녀의 사건발생 리포트 사본을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.

- 각 학교의 위기중재팀은 반드시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모든 교사 및 비교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.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반드시 본 규정 및 학교의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져야 합니다.

-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매년 10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졌음을 해당 학교의 학교 및 청소년 발달 계획에 인증해야 합니다.

- 본 규정 및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들은 10월 31일까지 교내 상주 학교 안전요원 레벨III/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한 학교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져야 합니다.

- 본 규정의 사본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.

II. 제안된 규정 전문을 보실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.

본 규정 전문은 교육정책 패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: http://schools.nyc.gov/AboutUs/leadership/PEP/publicnotice/2014-2015/May202015PEPRegulations

III.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, 담당실, 주소, 이메일 및 전화번호.

성명: Diane Costagliola
소속부서: 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
주소: 52 Chambers Street, Room 218, New York, NY 10007
이메일: RegulationA-411@schools.nyc.gov
전화: (212) 374-2448

IV. 현재 검토중인 개정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교육정책 패널의 회의 일자, 시간 및 장소.

2015년 5월 20일 6:00 p.m.
Prospect Heights Campus
883 Classon Avenue
Brooklyn, NY 11225